



전략적 동반자관계

베트남 수출입통관 및 FTA활용 가이드

2011. 11

안내 내용

- | | |
|----------|-------------|
| 1. 수입통관 | 10. 수출입통제 |
| 2. 자동차수입 | 11. 품목분류 |
| 3. 주류화장품 | 12. FTA활용 |
| 4. 수출통관 | 13. 원산지증명 |
| 5. 수출관세 | 14. FTA제외대상 |
| 6. 로컬수출입 | 15. 여행자통관 |
| 7. 관세환급 | 16. 무역대금회수 |
| 8. 로컬환급 | 17. HS빨리찾기 |
| 9. 징수유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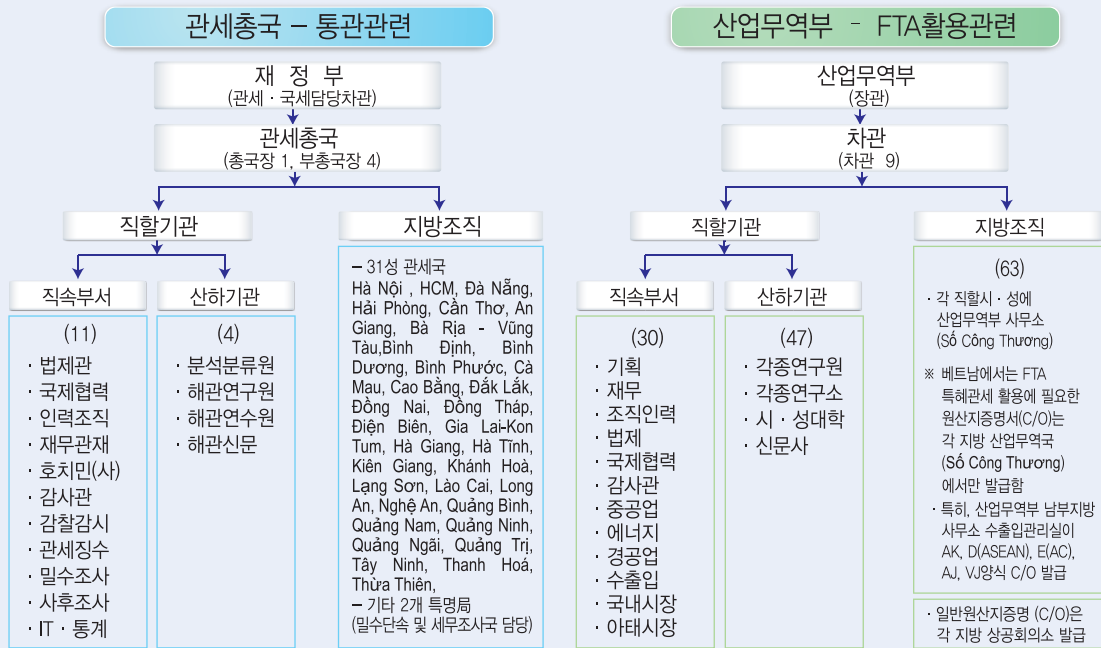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	715	890	920	1,064
1인당 GDP (\$)	835	1,024	1,070	1,168
경제성장률 (%)	8.48	6.23	5.32	6.78
물가상승률 (%)	8.36	22.97	6.88	9.19
실업률 (%)	5.02	4.6	5.5	2.88
수출 (억\$)	456	629	566	716
수입 (억\$)	627	804	688	840
무역수지 (억\$)	-141	-175	-122	-124

통관관련 행정조직



※ 통관행정 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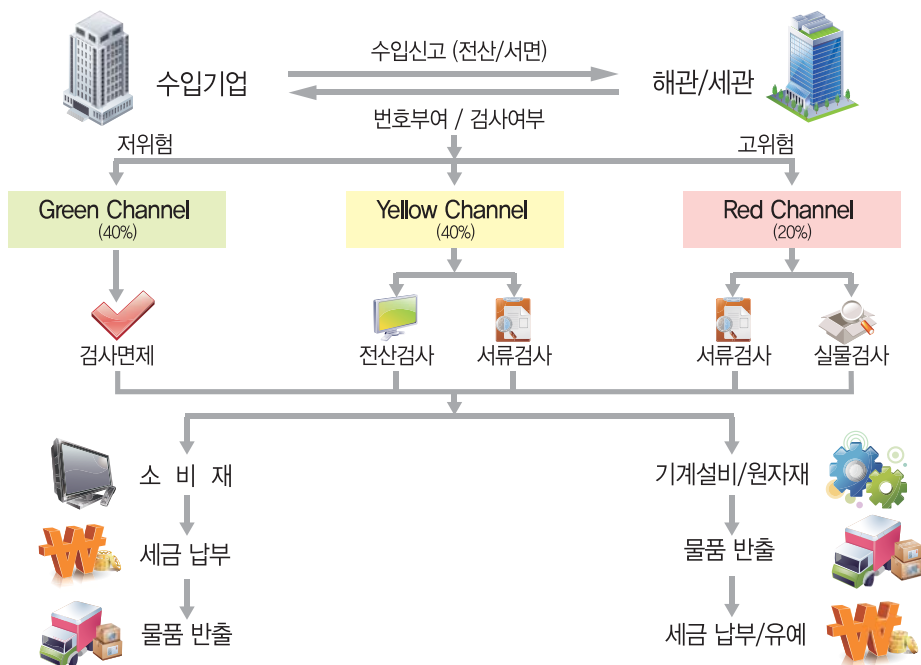
- 개별물품 통관 정책은 재무부, 산업무역부 등 주무부처가 결정하고, 관세총국은 주무부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데 중점
- 관세총국 직할 지방조직으로 밀수단속국과 세무조사국 등 2국을 운영
- 전국 63개 직할시, 省 가운데 31개 시·省에 관세국이 있으며, 局아래에 支局을 설치
- 局과 支局을 합하여 관세기관이라고 부름
- 각 직할시·省에 속하는 각 관세국은 지방행정 조직이고 신분도 지방공무원이지만, 관세총국의 지시를 받고, 타 직할시·省 관세국과도 협조
- 관세업무 수행 전체직원 수는 약 15,000명 수준



1. 수입통관 절차

- 전산으로 세관신고하는 방식과 종이서류로 세관신고하는 방식이 있다.
- 세관에 의한 화물검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기계설비와 원자재는 물품반출 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원자재는 재수출시까지 최장 275일까지 관세징수유예 가능하다.

▶ 수입업무 처리절차 ◀



※ 육류 · 수산물 · 곡류 · 두류 · 동식물 · 식품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및 검역 · 검사를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

수입신고 구비서류	물품반출전 세금납부 대상	물품반출후 세금납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 상품송장 (Invoice) • 선하증권 (B/L, AWB) • 포장명세서 • 수입계약서 • 기타 허가서, 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지정 소비자재 • 설립후 1년미경과 업체 • 징수유예기간중 법령위반업체 • 최근 1년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업체의 기계설비 • 성실업체의 수출용 원자재 • 기타 은행의 납세보증에 있는 경우

2. 자동차 수입절차

- 일반 수입신고 구비서류 외에 법령이 정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운전석은 왼편에 위치해야만 통관될 수 있다.
- 신차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중고차는 정액세 또는 정액 + 종가세가 적용된다.
- 외국에서 차량등록 기간이 6개월을 넘고, 주행거리 1만Km 이상이어야 중고차로 간주된다. 그 이하는 신차로 간주된다.

▶ 수입허용 기본요건 및 추가제출 서류 : 승용차 · 버스 · 트럭 공통 ◀

	신 차	중 고 차
기본요건	- 왼편 운전석 - 제조사로부터 판매자로 지정된 자	- 왼편 운전석 - 등록 후 6개월, 주행거리 1만Km 이상.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 -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함
추가서류	- 제조사로부터 딜러 또는 대리점 지정을 받은 서류 (수출국내 베트남대사관 공증 필요) - 교통운송부 발급 차량A/S센터 확인서 - 차량배기가스 증명서 (Euro 2기준) 등	- 차량등록증 - 차량등록말소증 - 원산지증명서 등 *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차량통관은 베트남내 하이퐁, 다낭, 호치민 등 3개 시 관세국 관할 지정세관에서만 가능

▶ 승용차 수입시 납부세액 계산법 ◀

	신 차	중 고 차
기본산식	- 총세액 = 종가관세 + 특소세 + 부가세 * 종가관세(A) = 구입가 × 관세율 특소세(B) = (차량구입가 + A) × 특소세율 부가세 = (차량구입가 + A + B) × 부가세율	- 총세액 = 종량관세 + 특소세 + 부가세 * 종량관세(A) = 배기량별 정액 종가관세 특소세(B) = (차량구입가 + A) × 특소세율 부가세 = (차량구입가 + A + B) × 부가세율
적용세율	- 종가관세 : 72~82% - 특별소비세 : 45~60% - 부가가치세 : 10%	- 종량관세 : 3,500USD~ - 특별소비세 : 45~60% - 부가가치세 : 10%

※ 승용차 중고차 종량세 : 1,000cc 미만; 3,500USD, 1,000~1,500cc; 8,000USD, 1,500~2,500cc; (수입가격×관세율)+5,000USD, 2,500cc 이상; (수입가격×관세율)+15,000USD

※ 트럭 종가세율 : 5~68% (24~45톤; 5%, 20~24톤; 20%, 5~10톤; 50%, 5톤이하 68%)

※ 통관후 지방정부 등록세 16~20%는 별도

※ 관세율은 WTO협정 등 준수를 위해 매년 초에 조금씩 낮춰 조정되고 있음



3. 주류, 화장품, 이동전화기, 의약품 수입절차

- 고급 주류, 화장품, 휴대폰 등은 베트남에서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사치성 소비재로 간주된다.
- 일반 수입신고 구비서류 외에 법령이 정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무부처로부터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류, 화장품, 휴대폰은 하이퐁, 다낭, 호치민 관세국산하 지정 세관에서만 통관된다.

▶ 수입허용 기본요건 및 추가제출 서류 ◀

	주류	화장품	휴대폰	의약품
기본 요건	- 보건부 발행 품질확인서 - 산업무역부 발행 수입허가서	- 보건부 발행 품질확인서 - 산업무역부 발행 수입 허가서	- 산업무역부 발행 수입허가서	- 보건부 발행 수입허가서
추가 서류	- 수입자는 정식 생산, 딜러 또는 대리점 계약서 및 지정서 제출 - 수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서	〈좌동〉	〈좌동〉	-
검사 · 분석	- 세관은 세관검사와 함께 전문기관 성분분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좌동〉	-	〈좌동〉

※ 세관당국은 추가 서류제출이나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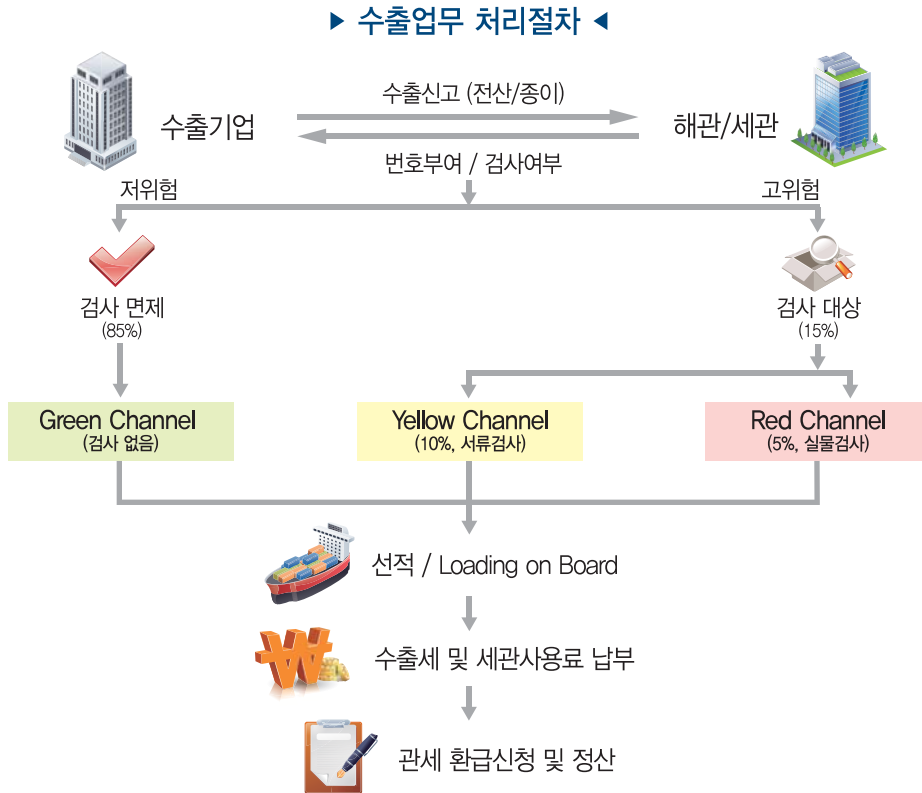
▶ 수입관세율 현황 : 예시 ◀

주류	화장품	휴대폰	의약품
- 맥주 : 40% - Spirits · Brandy: 51% - 와인 : 52% - Rice Wine : 57%	- 에센셜오일 : 5% - 향수 : 20% - 화장품 : 28% * 종류별로 5~28% 수준	- MFN 양허세율 : 2% - A-K FTA 세율 : 5% * 따라서 FTA세율 적용받을 필요 없음	- 의약품은 0% 세율 적용 품목 많음 - 기타는 5%, 또는 7% *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니고 5%

※ 예시 수입관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4. 수출통관 절차

- 전산으로 신고하는 방식과 종이서류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다.
- 세관은 전체 수출화물의 15% 범위내에서 화물검사를 실시한다.
- 광산물, 목재, 각종 금속 등 79개 품목에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 통관시에는 수출관세 외에 합법적으로 세관사용료가 부과된다.



수출신고 구비서류	수출세 납부대상	수출입신고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서 • 포장명세서 • 수출계약서 • 수출허가서 (필요시) 등 ※ 수출신고 후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로에 (15%) • 모래, 암석류 (17%) • 기타 광물 (10%) • 철광석 · 동광석 (30%) • 니켈 · 알루미늄 (20%) • 금속 Waste(15%~29%) 등 79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화물 소유권자 • 수출입대행 업체 • 법률상 소유권자 (비상업적 물품인 경우) • 수출입화물의 운송자 • 세관절차대리인(관세사)



5. 수출관세 부과대상

- 베트남은 79개 품목의 수출시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수출관세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수출거래 가격은 관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율은 변경될 수 있다.

번호	품명	세번	세율
1	알로에	1211000000	15
2	모래	2505000000	17
3	활석	2509000000	17
4	인회암석	2510000000	10~20
5	점판암석	2514000000	17
6	대리석	2515000000	17
7	화강석	2516000000	17
8	자갈, 쇠석	2517000000	10~17
9	석회암석	2521000000	17
10	생석회, 소석회	2522000000	5
11	25류 기타광물	2502~2530	10
12	철광석	2601000000	30
13	망간석	2602000000	15
14	동광석	2603000000	30
15	니켈광석	2604000000	20
16	코발트석	2605000000	20
17	알루미늄석	2606000000	20
18	납석	2607000000	20
19	아연석	2608000000	20
20	주석석	2609000000	20
21	크롬석	2610000000	20
22	텅스텐석	2611000000	20
23	우라늄석	2612100000	20
24	몰리브덴석	2613100000	20
25	티탄석	2614000000	10~30
26	지르코늄석	2615000000	20
27	은광석	2616100000	20
28	금광석	2616900000	30
29	석탄	2701000000	20
30	갈탄	2702000000	15
31	이탄	2703000000	15
32	코크스	2704000000	20
33	원유	2709001000	10
34	원덴세이트	2709002000	10
35	쇠가죽	4101000000	10
36	돼지가죽	4103300000	10
37	대나무숯	4402100000	10
38	원목	4403000000	10
39	다이아몬드원석	7102000000	15

번호	품명	세번	세율
40	귀석, 반귀석	7103100000	15
41	루비, 사파이어	7103910000	5
42	귀석 등 가루	7105000000	3
43	은, 미가공상태	7106000000	5
44	금, 함량 99.99% 이하	7108000000	10
45	금장식 및 부품	7113000000	10
46	금제품 및 부품	7114000000	10
47	기타 금제품	7115000000	10
48	철강 Waste	7204000000	22
49	동합금	7401000000	20
50	순수동, 합금동	7403000000	20
51	동 Waste	7404000000	29
52	합금동판괴	7405000000	15
53	동 설 및 편	7406000000	15
54	동 봉	7407000000	10
55	니켈	7502000000	5
56	니켈 Waste	7503000000	29
57	니켈 설 및 편	7504000000	5
58	니켈 봉	7505000000	5
59	알루미늄 괴	7601000000	15
60	알루미늄 Waste	7602000000	29
61	알루미늄 설 및 편	7603000000	10
62	납 괴	7801000000	15
63	납 Waste	7802000000	29
64	납 봉	7803000000	5
65	납 설 및 편	7804200000	5
66	아연 괴	7901000000	10
67	아연 Waste	7902000000	28
68	아연 설 및 편	7903000000	5
69	아연 봉	7904000000	5
70	주석 괴	8001000000	10
71	주석 Waste	8002000000	29
72	주석 봉	8003000000	5
73	주석 설 및 편	8007000000	5
74	각종금속 Waste	8101~8113	29
75	각종금속 반가공품	8101~8113	5
76	마그네슘 및 가공품	8104000000	15

※ 이 세율은 2011. 7월 현재 적용되는 것이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6. 현장 수출입절차

- 현장 수출입은 베트남 상인 (외투기업 및 임가공업체 포함)이 외국상인과 수출입계약을 하였으나, 해당 외국상인의 지정으로 베트남내 타 상인과 사이에 물품이 인수인계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입통관은 업체가 지정한 세관지국에서 진행한다.
- 현장 수출입물품의 확정은 임가공물품은 12/2006/ND-CP, 외투기업물품은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기타 물품은 154/2005/ND-CP 규정에 따른다.

▶ 통관 준비서류 및 절차 ◀

준비서류	처리기한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원본 4부 - 매매 ·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 - 부가세 영수증 사본1부 - 기타 수출입유형 판단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신고서상 기재된 물품 인수 인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내 미완료시 행정처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자는 신고서 4부 작성 (서명 · 날인) ② 수출자는 신고서 4부, 물품, 부가세 영수증을 수입자에게 인계 ③ 수입자는 관할 관세기관 검사 종료시 까지 물품보관 (검사면제 시 사용가능) 하고 관세기관에 신고 ④ 관세기관은 등록, 검사후 신고서 4부에 서명 날인 ⑤ 관세기관은 수입자에게 신고서 3부 반환 ⑥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신고서 2부 반환 ⑦ 수출자는 관할 관세기관에 신고 ⑧ 수출자 관할 관세기관은 서명 날인 후 신고서 1부 보관, 1부는 수출자에게 반환 ⑨ 환급 등 정산절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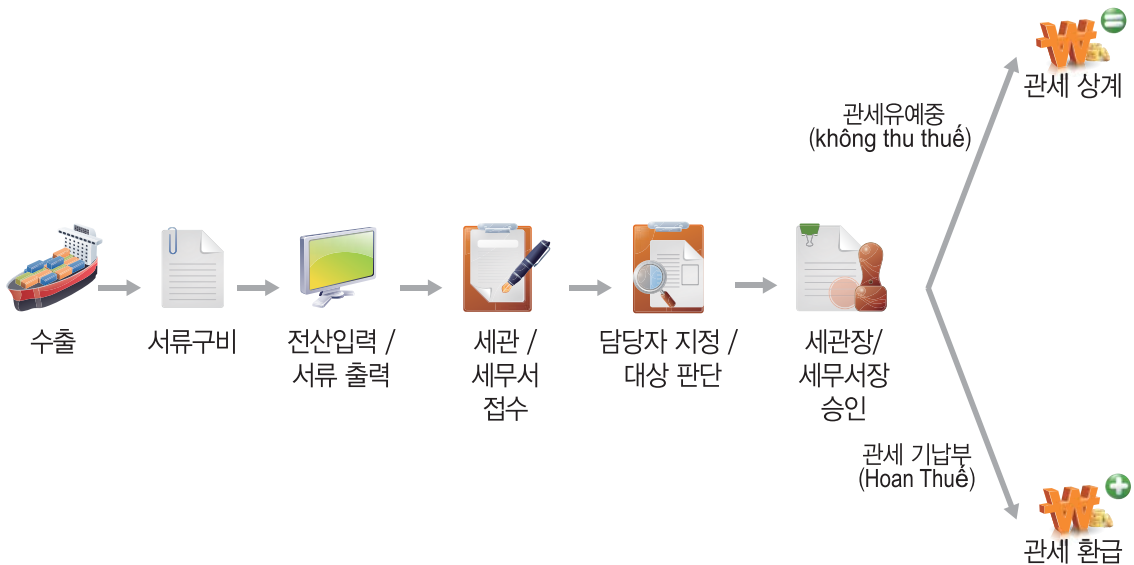




7. 관세환급 절차

- 수출 후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등 구비하여 신청한다.
- 환급대상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징수세 등 이다.
- 관세는 관세기관 (국 및 지국), 국세는 국세기관에 각각 신청한다.
- 내수목적으로 수입신고된 경우,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 관세환급 처리절차 ◀



▶ 환급 신청서류 및 지급산식 ◀

환급신청 구비서류	환급대상 세금종류	환급신청 제척기한	지급기한 및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소요량정산서 • 대금결제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세 • 수입관세 • 특별징수세 •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목적 신고 경우: 무제한 • 내수목적 신고 경우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 • 산식: 환급액 = 수입액 × 수출가액 ÷ 총생산가액

8. Local 환급절차

- 업체가 원료를 수입하여 수출품 생산, 임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국내 타 업체에 판매한 경우, 수입한 업체는 타 업체가 수출한 물품 생산에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업체가 원료를 수입하고 부속세트로 제작하여 직접 수출하는 타 업체에 판매한 경우, 물품비율에 상응하는 수입세 환급이 검토된다.
- 수입 원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직접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보세구역으로 수출되었어도, 관할 관세기관으로부터 외국 수출물품으로 확인받는 경우 상응하는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내국수출 관세환급 신청서류 ◀

구비서류	포함 내용
환급신청서: 원본 1부	- 물품종류, 세액, 환급요구 사유, 세관신고서를 기재하고, 여러 종류의 물품이 상이한 세관신고서에 속하는 경우 환급을 요구하는 세관신고서 나열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관세 납부를 입증할 증명서 원본 제시
환급신청서 첨부문서 목록	-
수출세관신고서: 원본 1부	- 수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이 물품이 실제 수출되지 않았음을 확인
수입세관신고서: 원본 1부	- 수입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이 물품이 실제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





9. 관세 징수유예 및 정산제도

- 관세 납부대상 물품 가운데 수출물품 제조원료에 대해서는 최대 275일까지 징수유예 (không thu thuế) 혜택을 제공한다.
- 수입자는 유예대상 원료에 대해 통관시 별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입자는 매년도 종료 후 1월내에 정산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가 수입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정산일까지 365일을 넘도록 수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원료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징수유예 및 정산 처리절차 ◀

징수유예 요건	정산절차		
	제출서류	정산시기	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수출물품 제조용 수입원료 - 신고 : 수입신고서 따로 떼어 신고 - 등록 : 연간계획 및 사전 수출물량 등록 <p>* 징수유예 허용여부와 허용기간은 세관이 수입 신고 건별로 검토 후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세관신고서 총합표 - 세금징수유예제도 이용 원료총합표 - 수출 세관신고서 총합표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총합표 - 폐기된 원료 총합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년도 종료후 다음 연도 1월말 이전까지 세관지국에 정산서류 제출 - 세금관리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산-후징수유예 해당 경우 · 서류검사 · 전산대조 * 처음 이용자, 법규준수 불량자 등 - 선정수유예-후정산 · 일반검사 · 전산대조 * 접수일로부터 15일내 징수유예 결정

※ 연체가산액 :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된 금액에 대한 0.1% (1,000분의 1)이 매일 연체액에 가산됨

※ 벌금부과액 : 허위신고, 탈세 등의 경우, 탈루액에 대한 추징 외에 사안의 성질과 위반정도에 따라 탈루액의 1~5배에 상응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10. 수출입통제 관리체계

- 베트남의 수출입통제 체계는 3가지 방식으로 구성 (12/2006/ND-CP 참조) 된다.
- 첫째,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 둘째, 산업무역부가 수출·수입 허가대상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 셋째, 주무부처가 수출·수입 통제대상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 외국투자기업은 투자증명서/투자허가서에 수출입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베트남의 수출입통제 관리체계 : 예시 ◀

수출입금지품목	산업무역부 허가품목	주무부처 통제품목	외투기업 수출입경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류 - A급 독성화학물질 - 문화재 - 희귀동식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가 있어야 수입되는 품목 -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수입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업무영역에 따른 통제하에서 수출입 되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권 : 투자증명서/허가서에 규정 (원유 제외) - 수입권 : " (취발유, 담배잎, 시가, 테이프·CD 제외)

※ 정부정책에 따른 외투기업의 수출입 제한품목

- 수출 : 쌀류
- 수입 : 의약품, 우편엽서, 우표, 달력, 인쇄물, 동영상, 일부 프린터

※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 쌀 수출 : 109/2010/ND-CP 참조
- 취발유 수입 : 84/2009/ND-CP 참조
- 캄보디아산 목재 수입 : 캄보디아 발급 수출허가서 제시해야 가능
- 승용차 수입 : 9인승 이하 신차 (제조사 딜러 지정서, 수출국소재 베트남 공관의 영사확인 등)
12인승 이하 중고차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개조불허 등)

※ 투자허가 이행을 위한 설비 면세 : 투자허가서/증명서 신청시 선 제출, 나중에 관세기관에 등록하고 추후 정산

▶ 수출입허가서 및 주무부처 확인서 발급 ◀

산업무역부 수출입 허가서		주무부처 전문분야 통제대상	
수출	수입	해당부처	통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허가서 - 자동수출허가서 * 자동허가서 : 수출을 제한하지 않으며, 구체적 요건만 맞으면 자동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 관세할당 수입허가서 - 자동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개발부 - 베트남중앙은행 - 우정통신부 - 문화정보부 - 보건부 - 산업무역부 - 자원환경부 - 교통운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및 전문기관이 수출입 기준과 조건을 정함 - 수출입 물품의 수량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 함 - 사용제한이 필요한 물품, 베트남에서 처음 사용되는 물품, 수출입 기준과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허가서 발급에 대해 규정함



11.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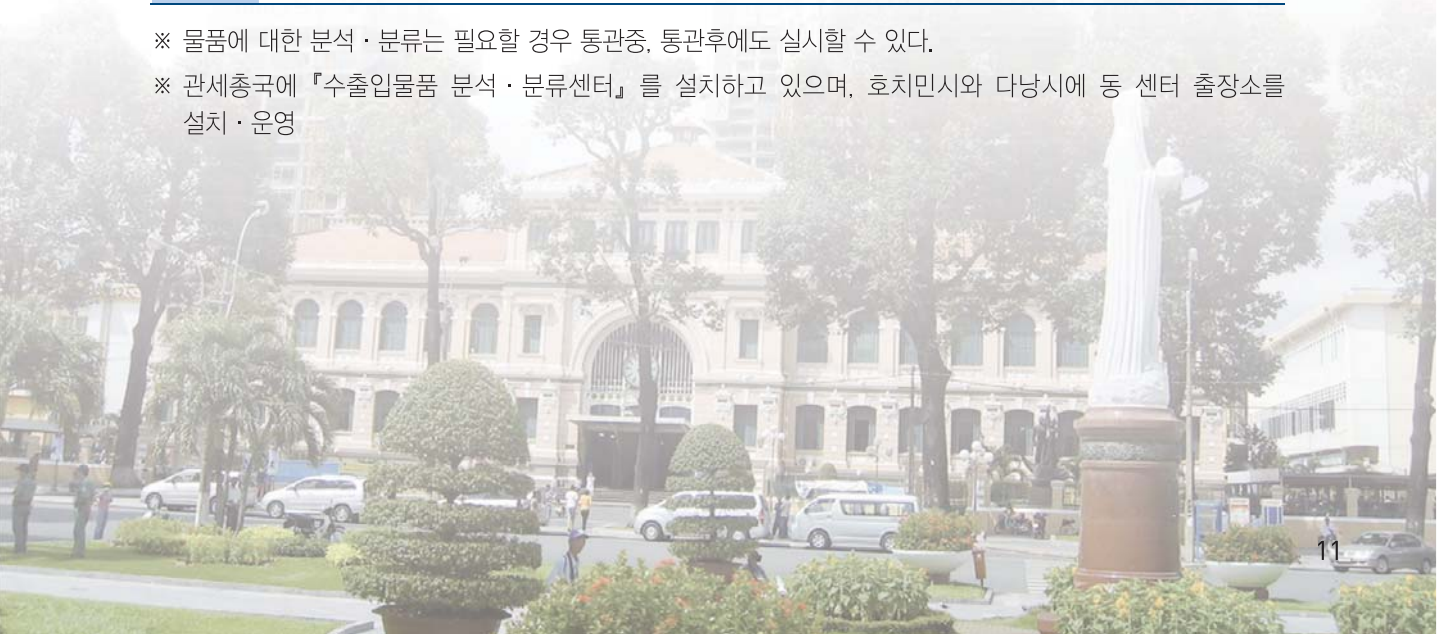
- 세관신고인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세기관으로부터 세관신고, 품목분류, 세율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세관신고인은 세관공무원의 감시하에 물품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거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에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에 대한 안내를 신청할 수 있다.
-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견본,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부가 시장안정 및 생산활동을 보호하는 세율적용 안내문건을 발행한다.

▶ 품목분류 사전확인 절차 ◀

신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물품 목록 · 세율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 - 기술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설명서, 재료, 사진, 제품형태, 기타 자료에 근거해서 분류가 가능한 물품 - 관세총국에 의해 기 결정된 적이 없는 물품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상세설명 첨부) - 기술자료, 사진, 카탈로그 등 - 물품 견본 (있을 경우) *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심사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류센터 접수 ② 서류보완 요구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내) ③ 결정서 송부 (서류 보완일로부터 30근무일내) <p>* 결정서 사용기한은 만 365일이며, 관련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p>

※ 물품에 대한 분석 · 분류는 필요할 경우 통관중, 통관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 관세총국에 『수출입물품 분석 · 분류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호치민시와 다낭시에 동 센터 출장소를 설치 · 운영



12. FTA 활용절차

- 거래대상 물품에 대한 해당 FTA상의 원산지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해당물품을 제조하고, 입증자료를 보관한다.
- 각 인민위 산업무역국 (Sở Công Thương)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는다.
- 각 FTA C/O 양식에 따라 발급된 C/O를 상대국 수입자에 제공한다.
- 상대국 수입자는 자국 세관에 C/O를 제출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수출자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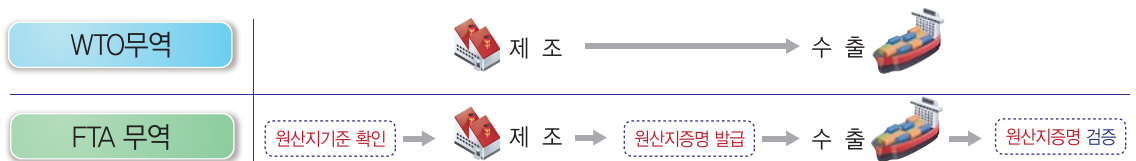
▶ FTA 관세특혜를 활용하기 위한 5가지 기본요건 ◀

거래자요건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 또는 발송하고 수입할 것
품 목 요 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원산지요건	협정에 정해진 일반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것
운 송 요 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환적 허용)
절차적요건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장, 서명 등), 적용신청 시기 등 충족

* 요건을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 향유 불가

- ※ FTA의 효과 : 체결국간 관세 ·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추가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개선, 수출이 늘어나게 한다.
- ※ 이름은 달라도, FTA와 같이 관세특혜가 있는 협정 : Customs Union, Common Market, EPA, ECFA, CER, GSTP, 등
- ※ 베트남에서 발효중인 FTA : ASEAN, ASEAN-Aus-NZ, ASEAN-Korea, ASEAN-China, ASEAN-India, ASEAN-Japan, Viet-Japan
- ※ 베트남이 추진중인 FTA 파트너 : Korea, TPP, EFTA, EU, USA

▶ FTA 관세특혜 활용절차 ◀



- ※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주로 농산물),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주로 공산품)
- ※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13. FTA 원산지증명 발급 및 사용

- 거래대상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도록 생산한 후 각 시, 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발급받는다.
- 상대국 수입자에 송부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자국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다.
-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입해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 발급기관 직인과 발급자 서명, 사인 등 기재사항이 모두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 원산지기준의 종류 ◀

원산지기준 종류	상품별 세부 결정방식
완전생산기준	쇠고기 예; Born, Cultivated, Grown, Butchered
세번변경기준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집적법 : $RVC = \frac{VOM}{FOB} \times 100\%$
특정공정기준	예; Fiber기준, Yarn기준, Fabric기준, Cutting & Sewing기준
역외가공기준	개성공단

* RVC; Regional Value Contents(역내부가가치), 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비원산지재료가치), VOM; Value of Materials(원산지재료가치)

▶ A-K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ATTACH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4. Size and number on package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VOM)	10. Number and date of issuance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FORM A/C Issued to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respectively. (Issu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ing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직인 · 사인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 (where applicable)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Claim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Claimed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ssuing Countr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ssu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각국의 직인 (예시) ◀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받아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 단위로 발급한다. 동일선적 B/L분할시는 사전세관 확인을 득한 경우 분할 분에 대하여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14. ASEAN/베트남-한국 FTA 적용 대상/제외 품목

- 각 FTA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혜를 작게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 ASEAN-한국 FTA는 전체 1만여개 품목 가운데 각국에 400개 내외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
- 거래물품이 민감품목인지, 초민감품목인지는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http://www.fta.go.kr/pds/fta_korea/asean/19.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특혜 차별화를 위한 베트남의 상품군 분류 ◀

일반품목群 (NT)	민감품목群(ST)	양허제외群(EXCEPT)																																																																																																																																																																																													
<p>Vietnam's Indicative Tariff Reduction Schedule under AKFTA</p> <table border="1"> <thead> <tr> <th>HS Code</th> <th>Descriptions of Goods</th> <th>AKFTA</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7">Chapter 1 - Live animals</td> </tr> <tr> <td>0101</td> <td>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101100000</td> <td>- Pure-bred breeding animals</td> <td>NT</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0101190</td> <td>- Oth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101901000</td> <td>-- Race horses</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0101902000</td> <td>-- Other horses</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0101909000</td> <td>-- Other</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 colspan="7">0102 - Live bovine animals.</td> </tr> <tr> <td>0102100000</td> <td>- Pure-bred breeding animals</td> <td>NT</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0102390</td> <td>- Oth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102901000</td> <td>-- Oxen</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0102902000</td> <td>-- Buffaloes</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0102909000</td> <td>-- Other</td> <td>NT</td> <td>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0103</td> <td>Live swine.</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HS Code	Descriptions of Goods	AKFTA	2007	2008	2009	2010	Chapter 1 - Live animals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10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NT	0	0	0	0	0101190	- Other:						0101901000	-- Race horses	NT	5	5	5	5	0101902000	-- Other horses	NT	5	5	5	5	0101909000	-- Other	NT	5	5	5	5	0102 - Live bovine animals.							010210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NT	0	0	0	0	0102390	- Other:						0102901000	-- Oxen	NT	5	5	5	5	0102902000	-- Buffaloes	NT	5	5	5	5	0102909000	-- Other	NT	5	5	5	5	0103	Live swine.						<p>APPENDIX 1</p> <p>SENSITIVE LIST</p> <p>Viet Nam:</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HS CODE</th> <th>DESCRIPTION</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90110</td> <td>- Preparations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td> </tr> <tr> <td></td> <td>19011029</td> <td>- Other:</td> </tr> <tr> <td></td> <td>19011030</td> <td>- Of soya bean powder</td> </tr> <tr> <td></td> <td>19011093</td> <td>- Other, containing cocoa</td> </tr> <tr> <td></td> <td>19011099</td> <td>- Other:</td> </tr> <tr> <td>2</td> <td>190190</td> <td>- Other:</td> </tr> <tr> <td></td> <td>19019011</td> <td>-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td> </tr> <tr> <td></td> <td>19019019</td> <td>- Other:</td> </tr> <tr> <td></td> <td>19019031</td> <td>- Filled milk</td> </tr> <tr> <td></td> <td>19019032</td> <td>- Other, not containing cocoa</td> </tr> <tr> <td></td> <td>19019034</td> <td>- Other, containing cocoa</td> </tr> <tr> <td></td> <td>19019041</td> <td>- In powder form</td> </tr> <tr> <td></td> <td>19019049</td> <td>- In other form</td> </tr> <tr> <td></td> <td>19019052</td> <td>- Other, not containing cocoa</td> </tr> <tr> <td></td> <td>19019053</td> <td>- Other, containing cocoa</td> </tr> <tr> <td>3</td> <td>210690</td> <td>- Other:</td> </tr> </tbody> </table> <p>(약 360개 품목)</p>	NO.	HS CODE	DESCRIPTION	1	190110	- Preparations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19011029	- Other:		19011030	- Of soya bean powder		19011093	- Other, containing cocoa		19011099	- Other:	2	190190	- Other:		19019011	-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19019019	- Other:		19019031	- Filled milk		19019032	- Other, not containing cocoa		19019034	- Other, containing cocoa		19019041	- In powder form		19019049	- In other form		19019052	- Other, not containing cocoa		19019053	- Other, containing cocoa	3	210690	- Other:	<p>APPENDIX 2</p> <p>HIGHLY SENSITIVE LIST</p> <p>GROUP E : Tariff lines exempted from tariff concession</p> <p>Viet Nam:</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HS CODE</th> <th>Product Descriptions</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4021000</td> <td>-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td> </tr> <tr> <td>2</td> <td>240220</td> <td>-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td> </tr> <tr> <td></td> <td>24023010</td> <td>- Beedies</td> </tr> <tr> <td></td> <td>24023090</td> <td>- Other:</td> </tr> <tr> <td>3</td> <td>240290</td> <td>- Other:</td> </tr> <tr> <td></td> <td>24029010</td> <td>-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of tobacco substit</td> </tr> <tr> <td></td> <td>24029020</td> <td>-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s</td> </tr> <tr> <td>4</td> <td>240310</td> <td>-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td> </tr> <tr> <td></td> <td>24031011</td> <td>- Blended tobacco</td> </tr> <tr> <td></td> <td>24031019</td> <td>- Other:</td> </tr> </tbody> </table> <p>(약 40개 품목)</p>	NO.	HS CODE	Product Descriptions	1	24021000	-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	2	240220	-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24023010	- Beedies		24023090	- Other:	3	240290	- Other:		24029010	-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of tobacco substit		24029020	-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s	4	240310	-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		24031011	- Blended tobacco		24031019	- Other:
HS Code	Descriptions of Goods	AKFTA	2007	2008	2009	2010																																																																																																																																																																																									
Chapter 1 - Live animals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10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NT	0	0	0	0																																																																																																																																																																																									
0101190	- Other:																																																																																																																																																																																														
0101901000	-- Race horses	NT	5	5	5	5																																																																																																																																																																																									
0101902000	-- Other horses	NT	5	5	5	5																																																																																																																																																																																									
0101909000	-- Other	NT	5	5	5	5																																																																																																																																																																																									
0102 - Live bovine animals.																																																																																																																																																																																															
010210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NT	0	0	0	0																																																																																																																																																																																									
0102390	- Other:																																																																																																																																																																																														
0102901000	-- Oxen	NT	5	5	5	5																																																																																																																																																																																									
0102902000	-- Buffaloes	NT	5	5	5	5																																																																																																																																																																																									
0102909000	-- Other	NT	5	5	5	5																																																																																																																																																																																									
0103	Live swine.																																																																																																																																																																																														
NO.	HS CODE	DESCRIPTION																																																																																																																																																																																													
1	190110	- Preparations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19011029	- Other:																																																																																																																																																																																													
	19011030	- Of soya bean powder																																																																																																																																																																																													
	19011093	- Other, containing cocoa																																																																																																																																																																																													
	19011099	- Other:																																																																																																																																																																																													
2	190190	- Other:																																																																																																																																																																																													
	19019011	-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19019019	- Other:																																																																																																																																																																																													
	19019031	- Filled milk																																																																																																																																																																																													
	19019032	- Other, not containing cocoa																																																																																																																																																																																													
	19019034	- Other, containing cocoa																																																																																																																																																																																													
	19019041	- In powder form																																																																																																																																																																																													
	19019049	- In other form																																																																																																																																																																																													
	19019052	- Other, not containing cocoa																																																																																																																																																																																													
	19019053	- Other, containing cocoa																																																																																																																																																																																													
3	210690	- Other:																																																																																																																																																																																													
NO.	HS CODE	Product Descriptions																																																																																																																																																																																													
1	24021000	-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																																																																																																																																																																																													
2	240220	-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24023010	- Beedies																																																																																																																																																																																													
	24023090	- Other:																																																																																																																																																																																													
3	240290	- Other:																																																																																																																																																																																													
	24029010	-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of tobacco substit																																																																																																																																																																																													
	24029020	-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s																																																																																																																																																																																													
4	240310	-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																																																																																																																																																																																													
	24031011	- Blended tobacco																																																																																																																																																																																													
	24031019	- Other:																																																																																																																																																																																													
* NT; Normal Track	* ST; Sensitive Track	* Except; Exception																																																																																																																																																																																													

※ 한국의 경우, 농수축산물, 섬유, 석유류 등에 대해 310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새우, 치즈, 오렌지, 사과, 배 등 6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베트남의 경우, 민감품목이 343개, 초민감품목이 160개 (관세율 50% 허용 33, 20% 허용 118, 관세율할당 허용 9), 담배, 자동차, 오토바이 등 40개 양허제외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 한국 및 베트남의 양허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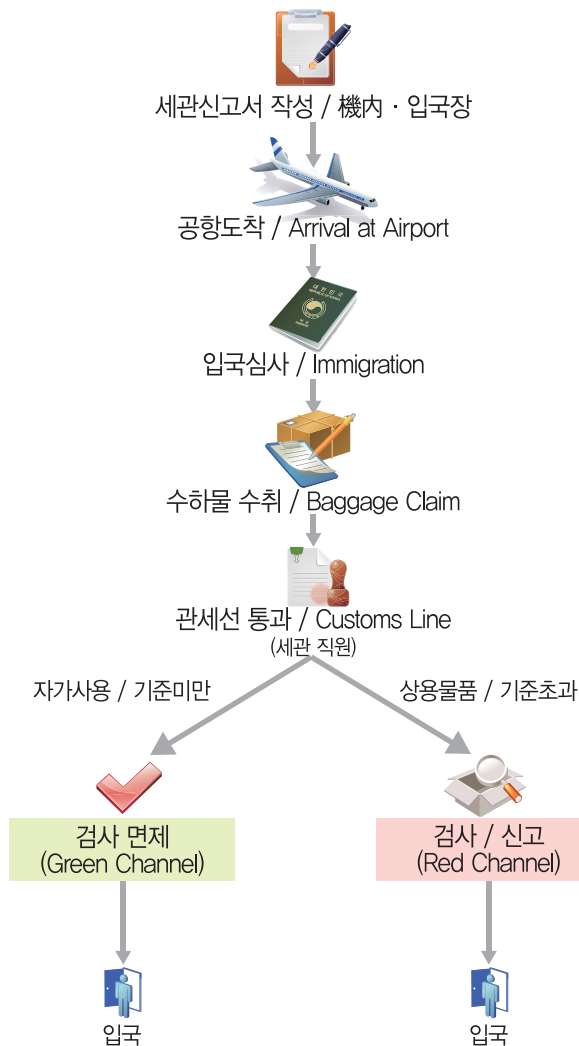
한국측						베트남측								
MFN tariff rate	2006	2007	2008	2009	2010	tariff rate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 20%	20	13	10	5	0	X ≥ 60%	60	50	40	30	20	15	10	0
15% ≤ X < 20%	15	10	8	5	0	40% ≤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10% ≤ X < 15%	10	8	5	3	0	35% ≤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5% < X < 10%	5	5	3	0	0	30% ≤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X ≤ 5%	standstill			0	0	25% ≤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 X < 20%	15	15	15	10	7	5	0-5	0



15. 여행자통관절차

-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하기 후 세관검사대까지 이동거리가 매우 짧다.
- 입국 시 미화 250달러 이상 물품은 세관직원에게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 술, 담배 등은 면세기준량을 넘을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 출국 시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신고하여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미 신고시 압수될 수 있다.

▶ 공항입국 시 휴대물품 통관절차 ◀



☞ 휴대품 면세통관 기준

- 술 : 22° 이상 1.5 리터
22° 이하 2.0 리터
- 담배 : 20갑, 엽권연 100개비
- 차 : 5Kg
- 커피 : 3Kg
- 골프채 : 자가사용 허용
- 금액한도 : 5백만동(USD250)

☞ 휴대 외환 · 동화 신고기준

- 외화 : USD 5,000 이상은 신고해야
출국시 반출 가능
- VND : 1,500만동 초과시 신고

※ 휴대물품 검사

- 입국시 Suitcase, 핸드백 등을 비롯한 모든 휴대물품은 X선 검색기 검사를 통과해야 함

※ 세관신고서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 기내 작성이 안된 경우는 출국장에서 세관직원에게 자진신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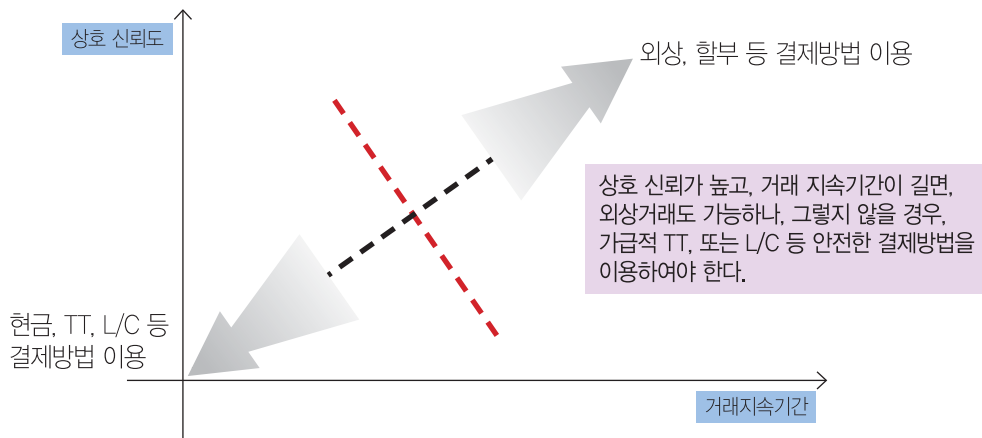
16. 안전한 무역대금 회수방법

- 무역대금 회수는 원료조달, 제조, 수출 등 제반 거래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 안전한 대금회수는 기업경영 비용 및 대가 충당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본지점간 거래, 계열사간 거래시는 실정에 맞게 결제방법을 선택한다.
- 첫거래, 신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TT, L/C 등 안전한 결제방식을 이용한다.
- 대규모 거래의 경우 무역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 환율 불안정기에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검토한다.

▶ 무역대금 회수를 위한 검토요소 ◀

결제방법 (안전성 順)	결제방법 선택시 고려사항	안전성 보강조치
- 현금결제 - TT결제 - L/C결제 - 외상, 할부 등 결제 * 상기 방법 혼합 사용도 가능	- 과거 거래지속 기간 - 신뢰도, 또는 위험도 - 할인이자, 환전수수료 등 소요비용 - 현금화에 소요되는 기간	- 무역보험 가입 - 환위험 헷지를 위한 Swap거래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 결제시기를 적절히 조절 등

▶ 결제방법의 선택방법 ◀



※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로 상황에 맞게 시기, 방법, 장소, 결제통화 등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결정하면 된다.



17. HS 품목분류 속견표

- 베트남의 HS코드는 10단위로 부여된다 (내부적으로 2단위 추가 가능).
- 원칙적으로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분류가 비슷하다.
- 1차 상품은 적은 번호에, 공산품은 큰 번호에 분류된다.
- 물품마다 고유코드가 부여되고, 일반(MFN) 세율과 특혜세율이 병기된다.

▶ 베트남의 HS코드 책자 ◀

수출입세율표 책자표지



HS코드, 물품명 및 해당세율

HS코드	MÔ TẢ HÀNG HÓA	DESCRIPTION	UNIT	MFN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8514.11.00.00.00	Chưa hoặc đã tẩy trắng	Unbleached or bleached	kg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12.00.00.00	Vải dệt chéo 3 sợi hoặc vải dệt chéo 4 sợi, kể cả vải dệt chéo chéo nhân, từ sợi staple polyester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13.00.00.00	Vải dệt thưa khác	Other woven fabric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21.00.00.00	Từ sợi staple polyester, dệt vân denim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22.00.00.00	Vải dệt chéo 3 sợi hoặc vải dệt chéo 4 sợi, kể cả vải dệt chéo chéo nhân, từ sợi staple polyester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23.00.00.00	Vải dệt thưa khác từ sợi staple polyester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24.00.00.00	Vải dệt thưa khác	Other woven fabric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30.00.00.00	Từ các sợi có các màu khác nhau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41.00.00.00	Đã in	Printed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42.00.00.00	Từ sợi staple polyester, dệt vân denim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8514.43.00.00.00	Vải dệt chéo 3 sợi hoặc vải dệt chéo 4 sợi, kể cả vải dệt chéo chéo nhân, từ sợi staple polyester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sq m	12	5	12	12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10	9	30

▶ HS코드 빨리 찾아가기 참고표 ◀

	0	1	2	3	4	5	6	7	8	9
00		산동물	고기류	어패류	낙농품	동물산품	수목꽃	채소류	과일류	커피차
10	곡물류	곡물가루	종자인삼	식물엑스	식물산품	동식물유지	육류가공품	설탕류	초코렛	곡물조제품
20	과일조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조제사료	담배	소금토석	광석	연료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페인트	화장품	비누	카세인	화약류	필름	화학산품	플라스틱
40	고무	가죽	가죽제품	모피	목재	코르크	목제품	펄프	종이류	인쇄물
50	견제품	양모	면제품	마제품	인조섬유1	인조섬유2	워딩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60	편물	편물외류	편물외섬유	기타섬유	신발류	모자류	우산	인모우모	석,시멘트	도자기
70	유리	귀석귀금속	철강	철제품	동제품	니켈	알루미늄	-	납제품	이연제품
80	주석	기타비금속	공구식기	비금속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정밀기기	시계	약기	무기	가구조명	운동용품	잡제품	예술공예품	-	-

가공도 →

↑
1차 상품

●
●
젊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기회와 도전의 나라,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발전하고,
서로 돕는 동반성장의 길을 찾아 나갑시다!



베트남 투자관련 상담 : MPI, 외국투자진흥청, Korea Desk : 04 + 3845-8149

이 책자는 통관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위해 최근 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나, 법령 등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 실제 업무단계에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 후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